



공공토목공사 누계시스템 관련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14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정12년(와) 제9499호
판결 일자	2002. 2. 14.	판결 결과	원고 패
원고	주식회사 공공토목적산연구소		
피고	1.A, 2.유한회사 사이유시스템, 3. B, 4. C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5조 1항, 민법719조, 709조,		
영업 비밀	공공토목공사에 관한 사이타마현 토목부 기술관리과에서 작성한 단가 표의 단가 등의 정보 중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경업금지의무, 비밀유지 서약		

02 사건 개요

원고는 공공토목공사 누계시스템의 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A, 동B 및 동C는 모두 원고회사의 전 직원으로, 피고 유한회사 사이유시스템(이하"피고회사"라고 한다.)은 피고A를 대표자, 피고B 및 동C를 직원으로 하는 유한회사로,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A, 동B 및 동C가 원고회사 재직 중에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피고A에게 퇴직 후의 비밀유지 계약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위약금의 지불을 요구하고 한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본건 정보는 성질상 비공지이고, 유용성을 갖고, 또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에서 데이터관리는 잘 되지 않았으며, 본건 정보는 원고가 적법하지 않은 수단으로 입수한 것이기에 법적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본건 정보를 원고로부터 부정 취득하여 피고회사에 공개하였으며, 해당정보를 토목마스터에 입력하여 판매하였다.		원고가 보유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며 자재 단가는 공표된 데이터를 입력한다.
정보가 입력된 토목마스터를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없다.
피고A는 '퇴직 후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원고의 영업비밀을 공개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		'퇴직 후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했으나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다.

04 판결 요지

부정경쟁방지법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재물이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는 등 사업 활동에 있어 유용한 것에 한해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취지는 사업자가 가지는 비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는 것에 일정한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호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다.
원고가 본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공토목공사에 관한 사이타마현 토목부 기술관리과에서 작성한 단가표의 단가 등의 정보 중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이다. 본건 정보는 공정한 입찰수속을 통하여 적정한 수주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요건을 빠뜨리고 있다.
따라서 본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비밀유지 서약으로 인한 비밀유지위반,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05 Key Point

범죄의 수단이나 탈세 방법 등을 가르쳐 주거나, 마약·각성제 등의 금지품의 제조방법이나 입수방법을 나타내는 정보와 같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는 법적인 보호의 대상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